

# 제조소등 설 치 및 후속 절차

2018. 03. 00

# 출제포인트

- 이 섹션에서는 용도 폐지, 안전관리자 선임, 자체소방대, 화학 소방자동차에 대해 묻는 문제들 위주로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니 이 내용들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한다.

#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

- 허가

- 제조소등을 설치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 필요
- 허가기준
  - ❖ 제조소등의 위치·구조 및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
  - ❖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
  - ❖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고 총리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
    -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할수 있으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하여야 한다.

-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 대상

-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 대상
  - ❖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·구조·설비에 관한 사항
  - ❖ 옥외탱크저장소(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) 또는 암반탱크저장소: 위험물탱크의 기초 지반,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

#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

- 허가

- 기술검토가 면제되는 경우

- ❖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(노즐 · 맨홀등 포함)의 교체(동일한 형태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)
    - ❖ 옥외저장탱크의 옆판(노즐 · 맨홀등 포함)의 교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

- 최하단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옆판 표면적의 10% 이내의 교체
    - 최하단 외의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옆판 표면적의 30% 이내의 교체
    - 옥외저장탱크의 밑판(옆판의 중심선으로부터 600mm 이내의 밑판에 있어서는 딩해 밑판의 원주길이의 10% 미만에 해당하는 밑판에 한함)의 교체
    -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(노즐 · 맨홀등 포함)의 정비(밑판 또는 옆판의 표면적의 50% 미만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 포함)
    -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 지반의 정비
    - 암반탱크의 내벽의 정비
    -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구조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에 의한 위험물 취급량의 증가가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인 경우

#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

## • 허가

### ▪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업무

#### ❖ 탱크안전성능검사

-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
- 암반탱크
-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총리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(이중벽탱크)

#### ❖ 완공검사

-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(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 제외)에 따른 완공검사
- 옥외탱크저장소(저장용량 50인 리터 이상)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

#### ❖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'특정옥외탱크저장소'에 대한 정기검사

#### ❖ 국민안전처장관의 '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'에 대한 검사

#### ❖ 국민안전처장관의 '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자'에 대한 안전 교육

#### ❖ <참고>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와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

#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

-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
  - 다음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·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 ·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.
    - ❖ 주택의 난방시설(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)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
    - ❖ 농예용 ·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
- 품명등의 변경신고
  - 제조소등의 위치 ·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·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시 · 도지사에게 신고

#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

- 이동탱크저장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
  -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(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울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제외)
  - 이동저장탱크를 보수(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함)하는 경우
  - 이동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
    - ❖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
  -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
  - 주입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
  - 펌프설비를 신설하는 경우

#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

-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

-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.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군부대 의 장은 미리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·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군부대의 장이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·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군부대의 장은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  - ❖ 이 경우 지체 없이 총리령이 정하는 다음 사항을 시 ·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❖ 총리형이 정하는 사항
    - 제조소등의 완공일 및 사용개시일
    -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결과
    - 완공검사의 결과
    - 안전관리자 선임계획
    - 예방규정

# 탱크안전성능검사

## • 검사의 필요성

- 위험물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 · 구조 및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 · 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.

## • 검사대상탱크

- 기초 · 지반검사 ·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
- 충수(充水) · 수압검사 :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

### ❖ 제외대상

-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
-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
-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

# 탱크안전성능검사

## • 검사대상탱크

- 충수(充水) · 수압검사 :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

- ❖ 면제

- 충수 · 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충수 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완공검사를 받기 전(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)에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탱크시험필증을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 - 시 · 도지사는 탱크시험필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충수 · 수압검사를 면제한다.

- 용접부검사 :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

- ❖ 제외대상

-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(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 제외) 시에 행하여진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
    -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: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방사선투과시험, 진공시험 등의 비파괴시험에 있어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

# 탱크안전성능검사

- 검사대상탱크
  - 암반탱크검사 :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
- 검사신청시기
  - 기초·지반검사 :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
  - 충수·수압검사 :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
  - 용접부검사 :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
  - 암반탱크검사 :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전

# 완공검사

## • 신청시기

-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: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
-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: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
- 이송취급소의 경우 :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(지하 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)
- 기타 제조소등의 경우 :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
  - ❖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
    -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
    -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,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
    -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

## • 신청서 제출

- 시·도지사, 소방서장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

#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

-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
  -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한 때 : 상속인
  - 제조소등을 양도 인도한 때 : 양수 · 인수한 자
  - 법인인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 :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
  - 경매, 환가, 압류재산의 매각 등 : 인수자
- 신고
  -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·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  -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 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)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(전자문서 포함)를 첨부하여 시 ·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 제조소등의 용도폐지

- 제조소등의 관계인(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)은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용도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)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신고서를 접수한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용도폐지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 위험물안전관리자

## • 선임

-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전에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.

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	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
위험물기능장, 위험물산업기사,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	모든 위험물
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	제4류 위험물
소방공무원 경력자(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)	제4류 위험물

## • 해임 또는 퇴직시

-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 선임

# 위험물안전관리자

- 신고
  -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
- 대리자 지정
  - 안전관리자가 여행·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
    - ❖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    - ❖ 대리자의 자격
      - 안전교육을 받은 자
      -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

# 위험물안전관리자

## • 책무

- 위험물의 취급 작업에 참여하여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
-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등에 대한 연락 업무
-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
-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 기록
-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,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

# 위험물안전관리자

## • 책무

- 기타 업무(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다음의 규정을 지시해야 한다)
  - ❖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·보존
  - ❖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
  - ❖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
  - ❖ 제조소등의 계측장치·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·관리
  - ❖ 제조소등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·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

# 위험물안전관리자

## •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

- 시 · 도지사 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-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·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 ·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- 등록사항 가운데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· 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등록취소사유
  - ❖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
  - ❖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
  - ❖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
- 업무정지 사유(6개월이내)
  - ❖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  - ❖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는 경우
  - ❖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

# 위험물안전관리자

-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
  -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
    - ❖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  - ❖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  - ❖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  - ❖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 기출 문제

1.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? (11-01)  
① 5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7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10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14일
  
2.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? (09-02)  
① 옥외저장소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옥외탱크저장소  
③ 주유취급소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이동탱크저장소

**Thank you**